

☒청해요양원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사업내용

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안내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C.T. 일상생활의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1. 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2. 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4. 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5.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6.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7. 의료 및 간호 서비스 : 건강 체크, 한의원,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8.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9. 급식서비스 : 식사 3회, 간식 1회를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유지 관리
10. 위생서비스 :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11. 일상 생활서비스 :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12. 심리.사회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3. 정서지원 서비스 : 위안잔치, 생일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4. 프로그램 개발사업 :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간담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자원봉사자 위안간담회 실시 등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15. 기 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2. 입소정원

입소 정원은 68명으로 한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수급자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요보호 노인 발생 시 등은 완도군수의 승인을 받아 우선 일시보호하고 필요한 추후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장기외박 대상자로 인하여 특례(정원의 5%)인원을 받을 수 있다.

3. 이용대상

- ① 청해요양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요양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 ②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입소결정이서 통보된 자

4. 모집방법

- ①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
-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안내서비스 대상자를 파악
- ③ 청해요양원 홈페이지 게시판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사례관리

대상자의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①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 ②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서비스 합의서, 상담기록지 작성)
-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을 종결사유 발생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